

## ●산림청고시 제2023-8호

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제8항,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202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01월 17일

산림청장

### 202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

#### 1.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

○ 부과금액=산지전용허가·산지일시사용허가면적×단위면적당 금액\*

\* 단위면적당 금액=산지별·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+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

#### 2. 산지별·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

○ 준보전산지: 7,260원/m<sup>2</sup>

○ 보전산지: 9,430원/m<sup>2</sup>

○ 산지전용·일시사용제한지역: 14,520원/m<sup>2</sup>

#### 3.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: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

○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7,260원/m<sup>2</sup>으로 한정한다.

부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